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75호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1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탄소중립·녹색성장·친환경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활동 촉진·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 기술 개발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제8호 및 제9호)
- 나. 기업지원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4조)
- 다. 우수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에 녹색기업인 중소기업을 추가하고, 조 제목을 변경함(안 제23조)
- 라. 녹색기술과 관련된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제3항)
- 마.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특례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5조제1항제3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용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4
----------	-----

발의연월일 : 2023. 7. 10.

발 의 의 원 : 홍용채 · 손태화 의원(2명)

찬 성 의 원 : 강창석 · 구점득 · 김경희 · 김우진 · 남재욱
박강우 · 박선애 · 서명일 · 정보빈 · 안상우
이정희 의원(11명)

1. 제안이유

탄소중립·녹색성장·친환경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활동 촉진·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 기술 개발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2조제8호 및 제9호)

나. 기업지원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4조)

다. 우수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에 녹색기업인 중소기업을 추가하고,
조 제목을 변경함(안 제23조)

라. 녹색기술과 관련된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제3항)

마.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특례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5조제1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중전의 제8호)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8. “녹색기업”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서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을 말한다.

9. “녹색기술”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우수중소기업 육성)”을 “(우수중소기업 등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우수한”을 “우수한 중소기업 및 녹색기업 중”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녹색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으로, “중소기업중”을 “중소기업 중”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6항제1호에 따라 신기술인증이
나 기술검증을 받은 중소기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술·경영·판매력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선택적·집중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창업지원 등) ①·② (생략)

<신 설>

③ (생략)

제35조(자금 특례지원) ① (생략)

1. (생략)
2.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로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중 제조업

<신 설>

② (생략)

---- 우수한 중소기업 및 녹색기
업 중 -----

-----.

제31조(창업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녹색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5조(자금 특례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
중소기업 중 -----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6항제1호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중소기업

② (현행과 같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2.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기술검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이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신기술
2.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설치한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기술의 성공 여부 판단을 위하여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이 모두 필요한 기술로서 하수·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를, 제2항에 따라 기술검증을 한 때에는 기술검증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모두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같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기술을 평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시범사업 및 환경기술 실용화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는 자
2.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3.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로서 환경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⑦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5. 생략

16.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7.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기업인·노동자에 대한 예우·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에 본사·지사·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시 지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노동자”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업 등”이란 기업·기업인·노동자를 말한다.
5.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6.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란 시 관내 기업 중 신규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말한다.
7. “우수중소기업”이란 제24조에 따라서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8.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책의 수립·시행)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발전을 주도한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기업사랑운동 지원체제

제4조(기업지원협의회 설치) ① 기업사랑운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창원시 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관련 담당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시의회 의원, 기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기업관련 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에서 심의·협의를 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및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사랑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
2.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6조(협의회 위원의 수당 등)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업사랑 민간단체 지원) 시장은 기관·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민간주도로 기업사랑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우수 기업 등 발굴

제8조(기업의 날 지정·운영) ①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다음 각 호의 기업의 기념일 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관내 공장신축 준공일
2. 신제품 발표일
3. 지역사회 공헌 활동일
4. 대규모 투자 등으로 홍보가 필요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날 운영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기업의 날 신청시기, 심사기준, 인센티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9조(최고 경영인 상)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창원시 최고 경영인 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의 종류는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과 상·하반기 최고 경영인 상으로 구분하며, 시상인원은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 및 상·하반기 최고 경영인 상 각 1명으로 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최고 경영인 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산업평화상) ① 시장은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체의 노동자 및 사용자를 발굴하여 창원시 산업평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산업평화상의 시상부문은 노동자 및 사용자 각 1명으로 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시찰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산업평화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최고 노동자 상) ① 시장은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노사화합,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노동자를 발굴하여 창원시 최고 노동자로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의 종류는 올해의 최고 노동자 상과 상·하반기 최고 노동자 상으로 구분하며, 시상인원은 올해의 최고 노동자 상 및 상·하반기 최고 노동자 상 각 1명으로 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시찰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최고 노동자 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최고연구팀상) ① 시장은 우수한 기술개발실적이 있는 연구팀을 발굴하여 최고 연구팀으로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의 종류는 올해의 최고연구팀상 및 분기별 최고연구팀상 각 1팀(명)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수상인원 및 수상팀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상팀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시찰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최고연구팀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 2(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상) ① 시장은 일자리창출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상 기업 수를 연간 5개 이내로 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표창 및 현판 교부
2. 기업 홍보
3.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단,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에는 제외)
4.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 지원
5. 시설 환경개선 자금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원내용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8조부터 제12조의 규정까지의 기업의 날 지정, 수상대상자 등의 공적을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

제14조(기업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① 시장은 우수한 산업 활동으로 우리시를 빛낸 기업 등의 훌륭한 발자취를 영원히 기리기 위해 기업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명예의 전당에 헌정할 대상은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올해의 최고 노동자 상 수상자로 한다. <일부개정 2019. 8. 14.>

③ 헌정자는 동관주물 부조와 관련 공적활동 자료를 1년간 게시하고 동관주물 부조는 역대 헌정자 부스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한다.

제15조(예우대상) ① 시장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하여 특별히 예우할

수 있으며, 예우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서 시상 받은 기업 등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 등에 수여하는 대통령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 등
 3.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
 4. 창원시 환경경영 기업대상 조례에 의하여 환경경영 기업대상을 수상한 기업체
-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예우대상 기간은 수여 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16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2.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선 지원
3.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4. 시 직영 체육시설 등 이용료 할인
5.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제17조(홍보)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예우 대상 기업 등에 대하여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의 업적을 홍보하여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적용배제) 시장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9조(관리 및 자금 확보 지원) ① 시장은 기업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노동자 복지증진 및 지원

제20조(노동자 복지증진) ① 시장은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노동자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 및 권익보호 등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노동자 복지지원) ① 시장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어려운 노동자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재학생에게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종사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창원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용자 조례」에 따라서 용자를 수혜 중인 저소득 노동자는 제외한다.

제22조(노동단체 지원) 시장은 건전한 노사화합을 위한 정책세미나 또는 토론회 개최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중소기업 고도화 촉진 등

제23조(우수중소기업 육성) 시장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술·경영·판매력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선택적·집중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우수중소기업 지정)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의 지정대상, 지정신청,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의 인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지원기간 내 기술개발 중에 있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중소기업 사이버지원센터 운영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정보기술 인프라 확충, 무역정보, 기업지원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사이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제품생산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국내·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산업기술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지식기반산업 육성

제27조삭제 <2016. 7. 22.>

제28조삭제 <2016. 7. 22.>

제29조(지식기반산업 육성) 시장은 세계일류 수준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개발·인력양성사업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기업활동 촉진 지원

제30조(기업간 상생협력 등) 시장은 대·중소기업간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창업지원 등) ① 시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산업용지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32조(투자유치) 시장은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기업유치 등에 대한 지원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33조(우선구매·판로 지원) ① 시장은 시 또는 시의 관할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에서 물품·용역(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의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따라 체결된 시의 공사계약에 소요되는 모든 공사자재를 시 관할구역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 또는 제품이 49% 범위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공사 수급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자 전부를 말한다)에게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과 직종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고급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자금 특례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례 지원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우수중소기업

2.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로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중 제조업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36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장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제37조(기업서비스센터 설치) ① 시장은 기업과 관련된 민원 및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서비스센터에서 기업과 관련된 민원 등을 처리할 담당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8조(기업애로상담관 지정) ① 시장은 기업서비스센터에 기업애로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을 두며, 상담관은 기업서비스센터장이 된다.

② 상담관은 기업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중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하여 중재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중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상담관은 기업관련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법의 규제완화가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39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집행·정산 등에 관하여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